

#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인증제도 소개

## 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이란?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,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.

## 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제도의 목적

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, 단체,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사용

- 기술 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, 신기술을 적용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
  - ※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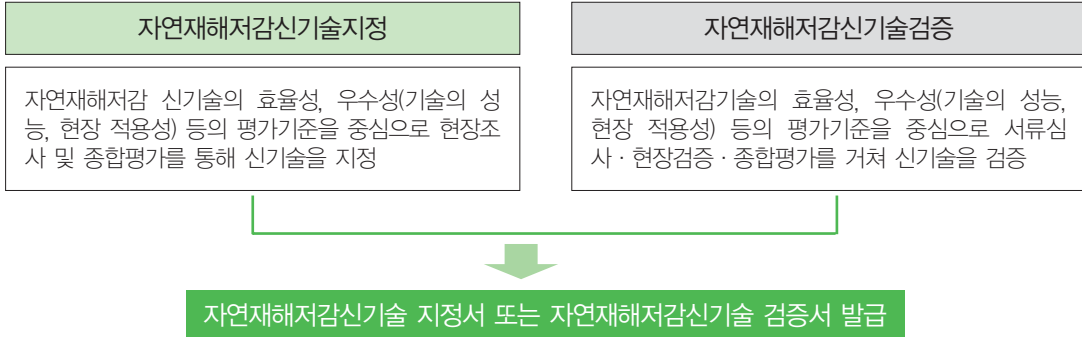
## ■ 추진경과

- 자연재해대책법 전면 개정 시 신기술 평가제도 도입('05. 1. 27)
-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전문기관 지정('06. 6. 8)
  - ※ 근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2항
- “자연재해저감신기술 운영매뉴얼” 발간('06. 11. 26)
- 자연재해저감기술 신기술 마크 특허등록('07. 3. 20)
- 신기술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(시행령 개정 '07. 7. 2)
  -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확인 → 지정, 유효기간 → 보호기간으로 변경

## ■ 신청대상 및 범위

- 국내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로 방재 공법에 관련된 기술
  - ※ 국내 최초신기술 입증을 위한 기본 근거자료로 특허 제출

## ■ 제도의 종류



## ■ 평가의 절차

- 신기술지정 : ▶ 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(현장 적용성 등 평가신청서 내용과 일치여부)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지정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- 기술검증 : ▶ 접수 → 공고 → 현장조사 → 서류심사(전문기관) → 현장평가(현장시설 시험·분석 등 성능 평가) → 종합평가 → 검증 → 우선활용권고(지자체 등)

## ■ 지정신기술의 지원사항

-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저감기술로 지정고시 된 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권고(시행령 제51조)
- 기술개발자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자연재해저감분야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(법60조)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8조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에 따른 조달우수제품선정 우대(2012년 1월1일부)

## ■ 신기술 접수,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, 제출서류, 비용

-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접수
  - 평가진행은 평가전문기관(한국방재협회)에서
-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확인 및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(총90일 소요, 평가신청서보완기간, 관보공고기간 제외)
- 신청서,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신청기술에 따른 기타 요구자료(운영매뉴얼참조)
- 신기술 지정 및 검증 평가비용 - 건당 2백만원
  - ※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원들의 심사수당 및 여비는 신청자가 부담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([www.dtnet.or.kr](http://www.dtnet.or.kr))

## ■ 심사기준

항목		인증종류	지정(검증)	보호기간 연장
신규성			• 새로운 기술이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부분을 개량한 기술	-
우수성	기술의 성능		• 기술의 효용성 • 완성도 • 중요도 • 발전성이 있는 기술	• 기술의 효용성 • 완성도 • 중요도 • 발전성이 있는 기술
	현장 적용성		•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• 안정성 •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• 법령 위배사항	• 기존기술과 비교한 경제성 • 안정성 • 시공성유지 관리 편의성 • 법령 위배사항
활용실적여부			-	• 현장활용실적
현장평가여부			(검증시)	-

※ 심사의결 : 제적위원 2분의 10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신기술로 인정.

## ■ 신기술표지



-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, 포장용지의 크기·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